2014년도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안내

1. 신고개요

○ 관계법령 :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
○ 신고기간 : **2015. 1. 12(월) ~ 2. 15(일)** (법정기한 준수필)

○ 신 고 처 : **해외건설e정보시스템(http://yes.icak.or.kr/)**

○ 신고대상공사

-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계약체결보고을 한 공사로서 당해년도(**2014년**)에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공사

*「해외건설e정보시스템」에 접속시 신고 대상공사 확인가능

☞ 메인메뉴 기성실적신고/증명서발급 ⇒ 기성실적신고(우측하단 실적신고등록 메뉴 확인)

○ 신고방법

-「해외건설e정보시스템」을 통한 온라인 신고

-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성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 要

-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붙임「구비서류 목록」의 증빙자료를 첨부(스캔후 Up-Load) 要

*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붙임「구비서류 목록」의 기본서류 이외에 증빙자료 불필요

○ 신고통화 :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 적용

* 기성통화 입력시 전년도 외환은행 최종고시 환률로 환산됨

○ 관련문의 : 해외건설협회 기성실적 TFT

Tel. 02-3406-1111/1112/1113/1104/1198/1096

2.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

○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1호 라목

○ 확인규정 : **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**
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129호)

○ 확인대상 :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대상 해외건설공사
*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

○ 실적확인 구비서류 : 붙임「**구비서류 목록**」참조

○ 실적발급 일정 : 2015. 1. 12 ~ 3. 31

3. 실적신고 유의사항

○ 다음 각 항의 경우 실적증명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
- 처리기간 내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기성액 산정 및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내용확인을 위한 보완, 수정요청에 대한 불응

○ 실적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위·변조한 경우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됨

붙임

2014년도 기성실적확인 구비서류 목록

	구비서류	확인내용
기본서류	○ **신고서 및 법정서식**	(법정서식 참조)
실적발급시 필수서류	○ **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** (별지 참조) ○ **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** (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)	· 기성청구 및 확인 · 지급 내역 *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내역 (CPA 확인 필수)
	○ **금융거래내역** (금융기관의 거래내역)	· 기성지급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내역 (수령인/송금인/금액/일자 필수)
기타 보완서류	○ 현지지사, Project Offica 등록서류 ○ 계약서류(상세 시방서 포함) ○ 해외투자 승인서 ○ 현지 면허 등록서류 ○ 아국인력 관련 서류 ○ 시공도면, 물량표, 사양서, 사진 등 ○ 현지 세금납부 내역 ○ 사업인허가 내역 ○ 현장 인허가 내역 ○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	· 사실관계 및 현지 확인 내역 ※「국토부 고시 제2014-129호 "해외건설 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"」제10조 및 별지 제1호에 의해 실적확인을 위한 심의시 추가적으로 기타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

별지

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

기성회차	선수금 (통화:)	기성확인(통화:)						기성수령(통화:)		비고
		확인총액	선수금공제	유보금공제	기타공제	청구일자	확인일자	수령금액	수령일자	

주1) 기본양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내용추가 및 변형 가능

주2) 금액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령통화가 계약통화와 상이할 경우 환산근거 자료 필요